

1. 개정이유

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개정(‘23.12.19)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실적 제출의무 완화(안 제29조제2항)

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의 이행실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나.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정비(안 별표1 제15호)

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혼합매립시설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에 포함하고,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조사기간을 설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별표 1 제15호가목 중 “제15호가목1) 및 2)”를 “제15호가목1)부터 3)까지”로 하고, 같은 란 나목 중 “제15호가목3)”을 “제15호가목4)”로 하며, 같은 란 다목 중 “제15호가목4)”를 “제15호가목5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) ① (생략)	제29조(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</u>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